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수 산 업 · 어 촌 발 전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8조의2)

가.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 심의대상 및 의결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8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
2.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
3. 원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 수산업·어촌정책 심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의3(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의 결정,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관리·운용, 요양급여의 산정기준, 보험료율 결정, 어선의 잔존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6. 어업인안전보험 보험사업의 운영계획, 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업인안전보험사업과 관련한 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앙심의회 의 위원장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7. 「소금산업 진흥법」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계승

에 관한 사항

8. 소금의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심의회 의 위원장이 소금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원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시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앙심의회 의 위원장이 원양산업 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야별 안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심의회에 심의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①</u> <u>중앙심의회는 법 제8조제3항에</u> <u>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u> <u>구성할 수 있다.</u> <u>1.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u> <u>2.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u> <u>3. 원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u> <u>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u> <u>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u> <u>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u> <u>위원장과 위원은 중앙 수산업 ·</u> <u>어촌정책심의회 의 위원장이 해당</u> <u>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u> <u>사람 중에서 위촉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u> <u>2년으로 한다.</u>
<u><신 설></u>	<u>제8조의3(분과위원회의 운영) ①</u> <u>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는 다음</u> <u>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u> <u>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u> <u>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목적물의</u> <u>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u> <u>재정지원에 관한 사항</u>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의 결정, 손실보전준
비금의 조성·관리·운용, 요양
급여의 산정기준, 보험료를 결정,
어선의 잔존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6. 어업인안전보험 보험사업의
운영계획, 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업인안전보험사업과 관련한
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앙심의회 의 위원
장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용천일염 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
공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개
정에 관한 사항

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7. 「소금산업 진흥법」 제15조
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계승에 관한 사항

8. 소금의 지리적표시 등록 심
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심의회 의 위원
장이 소금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원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
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시책수립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7.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앙심의회 의 위원
장이 원양산업 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 분야별 안건의 효율적이고

	<u>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8조 의2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심의회에 심의로 본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연 락 처	(044) 200 - 5423